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월례세미나

장애인 개인예산제

복지부 · 서울시 · 한자연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와 도약

| 일시 | 2025년 4월 9일 **수** 14:00

| 장소 |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evelopment Disabilities Policy Institute



한국장애인재단

koal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세미나 일정

시간	세부 내용	진행자
14:00~14:10 (10분)	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한대원 국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장: 김현승 연구위원 (서울복지재단/한국장애인복지학회 연구분과위원장)
14:10~14:40 (30분)	[발표 1] 복지부, 서울시, 한자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비교와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한나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40~15:10 (30분)	[발표 2]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1차 시범사업의 성과 및 향후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동기 교수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10~15:40 (30분)	[발표 3] 한자연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학습그룹 조직사업의 의미와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형진 부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설 자립생활연구소)
15:40~16:00 (20분)	Break & Coffe Time	
16:00~16:45 (45분)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정엽 사무국장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영임 본부장(한국장애인재단) 유명해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16:45~17:00 (15분)	질의 응답	
17:00~17:10 (10분)	마무리	

※ 본 행사는 유튜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정)로 동시 중계합니다.

CONTENTS

- [발표 1] 복지부, 서울시, 한자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비교와 쟁점 1**
 이한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표 2]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1차 시범사업의 성과 및 향후 전망 17**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발표 3] 한자연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학습그룹 조직사업의 의미와 제언 41**
 안형진 부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설 자립생활연구소)
- [토론 1] 한자연 옹호 기반 개인예산제도: 자기주도 개인예산 사업 참여의 의미 59**
 박정엽 사무국장(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토론 2]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의 성과, 한계, 개선사항 69**
 문영임 본부장(한국장애인재단)
- [토론 3] 복지부, 서울시, 한자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토론 75**
 유명해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발표 1]

복지부, 서울시, 한자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비교와 쟁점

이한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01. 개인예산제 배경



- ✔️ 복지국가의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책으로의 개인예산제에 대한 국제적 호응
 - ✔️ 장애인의 권리 vs. 공공부문 효율화 (Duffy, 2021; Needham & Dickinson, 2018)
- ✔️ 시대에 맞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
 - ✔️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표준화된 경직적 서비스
 - ✔️ 장애인의 수동성과 의존성, 실천가와 서비스 이용자간의 위계적 권력관계를 강화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판

01. 개인예산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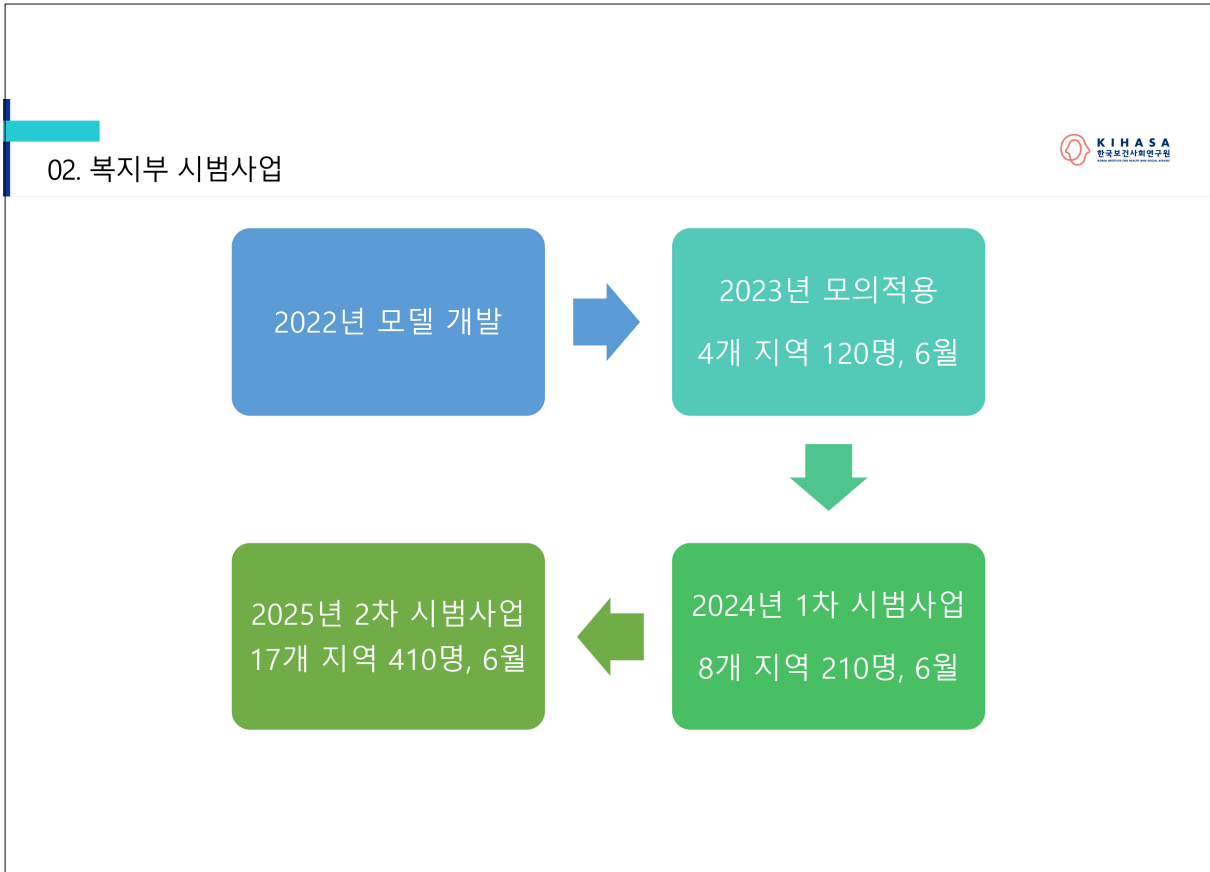
- ✔ 개인예산제의 도입 타당성과 성과에 관한 학술적, 경험적 근거 축적
 - ☑ 2010년대 이후 국외의 개인예산제 탐색, 국내 도입가능성과 타당성, 제도 설계 방안 마련 연구 수행
 - ☑ 민간 영역(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개인예산제의 핵심적 요소를 구현하는 사업 추진
- ✔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행 과정
 - ☑ (2017)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20)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개발 연구 (2020)
 - ☑ 한국장애인재단 (2023-)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연구
 - 2023년 하반기 시뮬레이션,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시행

01. 개인예산제 배경

- ✔ 자립생활센터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2017) '발달장애인 자립생활모델 개발' 개별유연화 서포트 시범사업
 - ☑ 개별 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시범사업 수행
 -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2024) 개인예산 자기주도 옹호 학습협력 그룹 조직사업
- ✔ 국정과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향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에서 개인예산제 추진 공식화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 p.40



- ### 02. 복지부 시범사업
-
- ✔ 특징
 - ✔ 급여량 산정을 위한 욕구 평가 과정 배제, 기존 할당 급여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할당
 - 활동지원(2023-24), 활동지원+발달장애인활동+발달재활(25) 급여 일부 (최대 20%)를 참여자 선택에 따라 개인예산으로 전환
 - 기존 급여 수급권과 동일한 범위의 개인예산 수급 권한
 - ✔ 폭넓은 급여 허용 범위 (2024-)
 - 이용 불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지출은 합의를 거쳐 인정
 - 장애연관성, 목표연관성이 소명되는 한 인정
 - ✔ 이원화된 합의 체계 운영
 - 회의체 합의(개인예산제 지원위원회)와 공무원 직권 합의 병행하고, 지자체가 자율적 선택
 - 변경계획은 공무원 직권합의 운영
 - ✔ 바우처 시스템과 연계한 선지출 사후정산

02. 복지부 시범사업

2023-2025년 사업 모델 비교

	2023년 모의적용	2024년+2025년(1) 시범사업 (활동지원기반)	2025년(2) 시범사업 (바우처확대)
급여	활동지원급여의 10%(모델1), 20%(모델2) 이내 사용	활동지원급여의 20% 이내 사용 -10%, 15%, 20% 중 택일	활동지원, 발달장애인활동(주간, 방과후), 발달재활 급여 20% 이내 사용
계획 수립, 참여자 모니터링, 정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담인력	복지전문기관+시군구 전담인력(청년인턴)	(좌동)
이용 범위(1)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6개 영역)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거, 일상생활, 일자리, 보육 및 교육, 법률 및 권익보장, 문화 및 여가 (8개 영역)	(좌동)
이용 범위(2)	제한된 품목 내 이용 가능	이용 불가 항목 외 (1)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이 있고, (2)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수단일 경우 이용 가능	(좌동)
참여지역	서울 마포, 경기 김포, 세종, 충남 예산	서울 강북, 경기 시흥, 부산 금정, 대구 달성, 대전 동구, 서구, 전남 해남, 충남 예산	(좌동)+서울 도봉, 관악,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 강원 강릉, 충북 청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03. 복지부-서울시 모델 비교

복지부-서울시 시범사업 비교 (2024년 하반기 기준)

구분	서울	복지부	차이점	고려사항
대상	만 18-65세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 100명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210명	연령 장애유형,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권	-아동, 발달장애인의 한시적 배제 -수급권과 급여의 부여 근거
대상 선정 방법	서울시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이용계획 심사를 통한 선정	참여자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자 분포를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	작위 vs. 무작위	-선정의 보편성
급여량	-인 최대 240만원 한도 내 별도 지원 -기능의 제약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직접 욕구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서비스에 구매에 비용을 급여로 할당	본인 할당 활동지원급여 20% 이내 개인예산 전환분은 활동지원에서 차감	-기존 급여 활용 vs. 추가 급여 지급 -기능 제약 (간접 욕구) vs. 직접 욕구	-급여 할당의 논거 -향후 제도 발전 방향과도 연관



03. 복지부-서울시 모델 비교

☑ 복지부-서울시 시범사업 비교 (2024년 하반기 기준) (계속)

구분	서울	복지부	차이점	고려사항
급여범위	-기존제도 보장 서비스 지원 불가 -보편적이고 일반적 필요가 인정되는 서비스가 아닌, 개인의 특수한 욕구에서 비롯된 서비스 지원 -물품 구매 불가	이용 불가 항목 외(1)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성이 있고, (2)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수단일 경우 가능	-이용 영역 -기존제도와 연계 -지출 인정 욕구의 보편성 vs. 특수성	-기존제도와 연계: 기존제도 약화 가능성
급여 지급	사무처(장애인재단)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이용료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매 대행	-이용자 선지출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하고 현금 받음 -계획 외 지출 항목 현금 불가	지급 방식	-향후 확대시 지속 가능성



03. 복지부-서울시 모델 비교

☑ 복지부-서울시 시범사업 비교 (2024년 하반기 기준) (계속)

구분	서울	복지부	차이점	고려사항
계획 합의	서울시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용계획 심사를 통해 승인	시군구별 지원위원회 운영 또는 담당공무원 직권 합의	-합의권한 단위 -합의 방법	
전달 체계	서울시 사무처(한국장애인재단) 서울시립 7개 복지관	복지부 사무국(한국장애인개발원) 시군구-공무원, 청년인턴 복지전문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사업시 콘트롤 타워와 전달체계 비용

*복지전문기관: 1지역 1~2개소 선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타

0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자연) 제안 모델



✔ 자기주도 개인예산의 4+1 요소

자기주도 요소	모델	비고
1. 예산(할당)	(1) 활동지원 시간 기반 예산 할당 (현실성 낮음) (2) 지원욕구 측정 기반 예산 할당 (3) 사람중심계획 기반 예산 할당 (현실성 높음)	(1), (2) 기능 제약과 지원 필요 (3) 실행계획 근거
2. 계획심의의결	(1) CIL 자체모델 (행정 용이, 옹호 제약) (2) 지역협력계획수립모델 (3) 계획대행수립모델 (행정 제약, 옹호 용이)	옹호의 용이성
3. 구매/고용 (구매)	(1) 기본생활지원모델 (객관적 욕구) (2) 지역사회생활지원모델 (3) 주관적웰빙지원모델 (주관적 욕구)	급여의 허용 범위

자료: 윤재영 외(2024).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연구보고서. p.36

0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자연) 제안 모델



✔ 자기주도 개인예산의 4+1 요소 (계속)

자기주도 요소	모델
3. 구매/고용 (고용)	(1) 자격기준지원모델 (당사자 권한 낮음) (2) 특정 상황 지원 모델 (3) 관계 중심 지원 모델 (당사자 권한 높음)
4. 재정관리	(1) 기관 중심 모델 (당사자 권한 낮음) (2) 공동관리 모델 (3) 이용자 중심 관리 모델 (당사자 권한 높음)
+1. 지원씨클	(1) 동료 멘토 중심 지원씨클 (당사자권한 높음, 안전 보장 약함) (2) 지역사회 중심 지원씨클 (3) 가족 중심 지원 씨클 (당사자 권한 낮음, 안전 보장 강함)

자료: 윤재영 외(2024).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연구보고서. p.36



05. 복지부-서울시-한자연 모델 비교

☑ 한자연의 한자연-서울시-복지부 모델 비교

구성요소	한자연	서울시	복지부
학습과 협력	학습 네트워크 활동	-	-
사람중심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PCP에 기반한 지원체계 수립 지원씨클과 동료지원	정형화된 욕구파악	-
개별유연화된 예산 할당 및 지출	사람중심적 개인별 욕구 파악과 지원계획에 근거한 예산 용도 및 용처 유연화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제 기 통로 보장	기본적 가이드라인 제시	활동지원서비스 근간 예산 할당
다각적 옹호와 지지	과정 전반에 있어서 동료상담사 등의 당사자 권익옹호 활동 보장	-	-

자료: 윤재영. (2024).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실천사업에 대한 분석과 실현 방안". p.38



05. 복지부-서울시-한자연 모델 비교

☑ 복지부-서울시-한자연 모델 비교 (2024년 하반기 기준)

구분	서울	복지부	한자연
대상	만 18-65세 정도가 심한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장애인 100명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 210명	장애유형, 기존 서비스 수급 무관, 아동 제외 추정
대상 선정 방법	서울시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이용계획 심사를 통한 선정	참여자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자 분 포를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	참여 퍼실리테이터 기관(자립생활 센터) 자율 선정 추정
급여량	-인 최대 240만원 한도 내 별도 지원 -기능의 제약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직접 욕구의 타당성을 평가 하여 서비스 구매에 비용을 급여 로 할당	본인 할당 활동지원급여 20% 이 내 개인예산 전환분은 활동지원에서 차감	기관 자율 -SIS 기반 할당 1개소, -PCP 기반-활동지원시간 고려 할당 1개소 -PCP 기반 할당 6개소

05. 복지부-서울시-한자연 모델 비교

☑ 복지부-서울시-한자연 모델 비교 (2024년 하반기 기준) (계속)

구분	서울	복지부	한자연
급여범위	-기존제도 보장 서비스 지원 불가 -보편적이고 일반적 필요가 인정되는 서비스가 아닌, 개인의 특수한 욕구에서 비롯된 서비스 지원 -물품 구매 불가	이용 불가 항목 외(1)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성이 있고, (2)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수단일 경우 가능	-제한 없음
급여 지급	사무처(장애인재단)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이용료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매 대행	-이용자 선지출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하고 환급받음 -계획 외 지출 항목 환급 불가	-불명 -현금을 지급하고, 기관에서 정산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

05. 복지부-서울시-한자연 모델 비교

☑ 복지부-서울시-한자연 모델 비교 (2024년 하반기 기준) (계속)

구분	서울	복지부	한자연
계획 합의	서울시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용계획 심사를 통해 승인	시군구별 지원위원회 운영 또는 담당공무원 직권 합의	-기관 자체 합의 7개소 -독립적 위원회 구성 합의 1개소 (변경 권한 기관 위임)
전달 체계	서울시 사무처(한국장애인재단) 서울시립 7개 복지관	복지부 사무국(한국장애인개발원) 시군구-공무원, 청년인턴 복지전문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자연 퍼실리테이터 기관



06. 개인예산제 설계 이슈

- ✔ 제도의 범위와 기존 제도와의 연계
 - ✔ 활동지원을 포함하는 현 지원서비스와의 관계
 - 직접고용 등 논의 필요
- ✔ 대상과 급여량의 할당
 - ✔ 수급권 범위-돌봄(care)과 지원(support)이 필요한 모든 사람?
 -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제한
 - ✔ 급여 할당 근거
 -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기능의 제약 vs. 지원계획의 타당성
 - 욕구 평가의 기술적, 행정적, 정치적 수용 가능성
 - ✔ 복지부는 기존 제도의 수급권 및 급여량과 연계하여 개인예산제의 자체 결정 여지가 없도록 설계
 - 자율 사용 비율만 조정



06. 개인예산제 설계 이슈

- ✔ 급여 유형과 범위
 - ✔ 현금 지급의 제한적 실험: 향후 공적 영역의 실험 가능성?
 - ✔ 급여유형은 정산방식과 연계: 복지부, 서울시 정산 방식의 본 사업 이행 가능성
 - ✔ 사업의 취지를 극대화하는 적절한 급여 범위의 제안
- ✔ 전달체계
 - ✔ 사업 컨트롤 타워
 -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 자기주도적 이용자 지원
 - ✔ 옹호
- ✔ 정책 환경

07. 복지부 시범사업 성과

☑ 복지부 시범사업 모의적용 (2023) (이하나 외, 2024)

- ☑ 장애유형별 분포는 뇌병변 25명, 지체 21명, 지적 17명, 자폐성 11명 시각 8명, 기타 4명 (총 86명)
- ☑ 참여자 연령대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
- ☑ 인당 총 140여 만원의 개인예산 할당, 평균 98.3% 소진
- ☑ 이용 영역별 정산액은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가 60% 이상 차지
- ☑ 활동지원 수급권은 있으나 이용하지 않던 (사업참여 직전 3개월간 급여 미이용) 17명 참여
- ☑ 유효누적 신청 인원 119명 중 33명 중도 포기 (27.7%)

07. 복지부 시범사업 성과

☑ 복지부 시범사업 모의적용 (2023) 만족도

	구분	평균	만족 비율	N
정보제공	사업 참여 전 정보 접근성	2.32	39.02	82
	사업 참여 전 정보의 충분성	2.71	63.41	82
	사업 참여 전 정보와 참여 후 정보의 일치	2.83	74.39	82
신청	신청 과정의 편리성	3.12	90.24	82
	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 신속성 및 정확성	3.11	84.15	82
이용계획 수립 및 합의	요구 및 의견 반영 충분성	3.05	81.71	82
	장애 특성 고려 정도	2.95	74.07	81
	담당자 상담과 지원의 전문성 및 도움 정도	3.39	95.12	82
급여 이용	이용 과정의 원활함	3.12	84.15	82
	문의사항에 대한 담당자 및 담당기관 대응 적절성	3.44	98.78	82
	이용계획 변경시 담당자 및 담당기관 대응 적절성	3.41	96.30	81
정산	정산 과정의 편리함	3.21	82.93	82
	정산 과정의 신속함	3.30	91.46	82
전반적 만족도	사업 절차에 대한 만족도	3.17	86.59	82
	사업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3.16	81.71	82
	사업 담당자 및 담당기관에 대한 만족도	3.39	96.34	82
	기대했던 것의 충족 정도	3.09	80.49	82
	전반적인 만족 정도	3.17	81.71	82
추천 및 참여 의향	주변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추천 의향	3.52	96.34	82
	시범사업 및 본사업시 본인 참여 의향	3.57	95.12	82

자료: 이하나 외. (202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p.135



07. 복지부 시범사업 성과

✔️ 복지부 1차 시범사업 (2024) (2024.11.13 기준)

- ✔️ 누적 신청인원 440명 (참여 정원의 2.1배 가량)
- ✔️ 장애유형은 발달장애 49.0%, 지체, 뇌병변 34% 차지
- ✔️ 연령별 분포는 19세 이하가 전체 참여자의 1/3 이상 차지
- ✔️ 참여자의 80%가 활동지원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 이용
- ✔️ 인평균 월 급여액은 44만원 남짓 (6개월간 265만원)
- ✔️ 개인예산 이용 영역 다양화
- ✔️ 참여자 만족도 전 항목에서 상승
- ✔️ 기존 제도로 충족할 수 없는 지원서비스 희망 참여자에게 특히 유용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
- 윤재영. (2024).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실천사업에 대한 분석과 실현 방안. 옹호기반 개인예산 실천사업 성과공유회 자료집. pp.3-46.
- 윤재영, 안형진, 박재성, 임진아, 이승진, 계기석. (2024).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연구보고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이한나, 조휘래, 엄다원, 오육찬, 황주희, 김성희, 김동기, 신은경, 이동석, 조윤화. (202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uffy, S. (2021). *EU roadmap for user-centred funding for long-term care and support*. UNIC project. Brussels: <https://www.unicproject.eu/publications/>
- Needham, C., & Dickinson, H. (2018). 'Any one of us could be among that number': Comparing the Policy Narratives for Individualized Disability Funding in Australia and England.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2 (3), 731-749.

감사합니다.



[발표 2]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1차 시범사업의 성과 및 향후 전망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1차 시범사업의

성과 및 향후 전망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차

I. 서론

II. 성과평가 설계

1. 이론적 토대
2. 성과지표 내용

III.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2. 양적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3. 질적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4. 향후 개인예산제 방향성에 대한 의견

IV. 향후 전망

1. 서론

CHAPTER

01

서론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및 시행 준비

- 기초모델 제안** 김용득 외(2017)의 서울시 장애인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연구
- 모델 구체화** 이성규 외(2022)의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연구
- 모의적용** 이승기 외(2023)의 서울시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 총 8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적용
 - 제도 전 과정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도출
- 1차 시범사업** 서울시 거주 장애인 75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진행(2024.07.~2025.03.)



지난 1차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 검증,
향후 2차 시범사업 및 본사업 설계 시 적용해야 하는 개선방안 도출

II. 성과평가 설계

CHAPTER
02

1.이론적 토대

<그림 1> 논리모델에 근거한 성과지표개발



성과평가
설계

CHAPTER
02

성과평가
설계

2. 성과지표 내용

1) 전체 사업 성과지표

-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 진단, 개선사항 도출 관련 지표
- 목적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진행과정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향후 2차 시범사업에 의미있는 시사점 개발

2) 참여자 성과지표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효과성 검증 관련 지표
- 참여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
- 유사실험 설계방식 중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와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 개인예산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나, 이차적으로 장애인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그 가족의 긍정적 변화까지 목적에 포함

CHAPTER
02

성과평가
설계

2. 성과지표 내용

1) 전체 사업 성과지표

(1) 전체사업에 대한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조작적 정의	자료수집 방법
개인예산계획 수립 소요시간	참여자 선정 통지후 지원기관을 통해 개인예산계획 수립일까지 소요된 시간	수행기관/서울시
개인예산계획 심의건수	개인예산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인예산계획 건수	수행기관/서울시
개인예산계획 이의신청 수용건수	개인예산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개인예산계획 승인내용을 조정한 건수	수행기관/서울시
급여사용 비율	승인된 개인예산 월별, 전체 사용비율(개인예산 지출액/개인예산 승인액)*100]	수행기관/서울시
목적에 맞는 개인예산사용 비율	개인예산계획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한 비율(월별, 전체 정산비율)	수행기관/서울시
지원영역의 다양성	6개 지원영역이 차지하는 월별, 전체 비율	수행기관/서울시
참여자 모니터링 건수	전체 사업참여자 대상 모니터링 격월 및 전체 건수	수행기관/서울시
중도 포기자 수 및 비율	개인예산계획 중도포기자 월별 및 전체 건수, 중단비율(중도포기자/누적 선정자)*100]	수행기관/서울시
변경 개인예산계획 수립건수 및 비율	개인예산계획을 변경한 격월, 전체 건수 및 변경비율(계획변경자/참여자)*100]	수행기관/서울시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의 개인예산이용에 대한 만족도	참여자 75명 만족도 조사

CHAPTER
02

성과평가
설계

2. 성과지표 내용

1) 전체 사업 성과지표

(2)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내용

단계	내용	단계	내용
정보제공	사업 참여 전 정보 접근성	정산	정산 과정의 편리함
	사업 참여 전 정보의 충분성		기관담당자 지원의 적절성
	사업 참여 전 정보와 참여 후 정보의 일치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신청	신청 과정의 편리성		6개 영역에서 사용했던 서비스 만족도
	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 신속성 및 정확성		기대했던 것의 충족 정도
이용계획 수립 및 합의	요구 및 의견 반영 충분성		원하는 삶의 변화 달성정도
	장애 특성 고려 정도		주변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추천 의향
	지원기관 담당자와 진행한 상담 횟수의 적절성	시범사업 및 본사업시 본인 참여 의향	
급여 이용 및 변경	담당자 상담과 지원의 전문성 및 도움 정도		
	이용 과정의 원활함		
	사용범위에 대한 만족		
	급여의 충분성		
	급여사용 기간의 충분성		
	문의사항에 대한 담당자 및 지원기관 대응 적절성		
	이용계획 변경시 담당자 및 지원기관 대응 적절성		

CHAPTER
02

성과평가
설계

2. 성과지표 내용

2) 참여자 성과지표

(1) 양적조사 성과지표

비동일 통제집단설계를 위해 참여자 75명과 미참여자 72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 실시
 - 사전조사 : 2024.11.
 - 사후조사 : 2025.02.

차원	성과지표명	조작적 정의
개인	자기결정	삶에 대한 자기통제 및 결정정도
	자기효능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정도
	자존감	자신의 존재에 대해 존중하는 정도
	사회적 포함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살아가는 정도
	삶의 만족도	개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
	삶의 질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가족	건강상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전반적 건강상태
	가족 건강성	가족 간 이사소통 및 유대가 건강한 상태
	가족 응집력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과 긍정적 상호작용

CHAPTER
02

**성과평가
설계**

2. 성과지표 내용

2) 참여자 성과지표

(2) 질적조사 질문

참여자 8명과 가족 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 및 개별심층인터뷰 진행
- 시범사업을 통해 얻게 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확인
- 참여자 4회, 가족 3회 진행(2025.02.)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귀하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귀하의 가정에서의 변화 포함)
- 개인의 자기결정,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 사회 참여 등 증가
 - 가족관계의 질 향상 등

III. 성과평가 결과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1) 개인예산계획 수립 투입인력 및 시간

1-1) 지원인력 1인당 개인예산계획 수립 투입 건수 및 시간

(단위 : 건, 회, 시간)

구분		전체	지원인력 1인당 평균
투입 건수		91	2.5
개인예산계획 수립 상담	대면상담	진행횟수	7.3
		소요시간	13
	유선상담	진행횟수	12.3
		소요시간	5
개인예산계획 작성 소요시간		1,242	34.5
개인예산계획 수립 지원 업무 총 소요시간		1,890	52.5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1) 개인예산계획 수립 투입인력 및 시간

1-2) 참여자 1인당 개인예산계획 수립 투입인력 및 시간

(단위 : 명, 회,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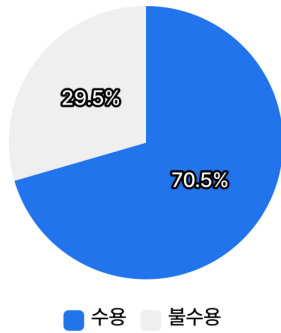
구분		전체	참여자 1인당 평균
개인예산계획 수립 상담	대면상담	진행횟수	2.9
		소요시간	5.1
	유선상담	진행횟수	4.9
		소요시간	2.0
개인예산계획 작성 소요시간		1,242	13.6
개인예산계획 수립 지원 업무 총 소요시간		1,890	20.8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2) 개인예산계획 이의신청 수용건수



이의신청	17건(100.0%)
수용	12건(70.5%)
불수용	5건(29.5%)

<불수용 이유>

- (1) PT 신청 : 일반적인 신체활동 또는 의료, 재활 서비스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지원 불가
- (2) 드림학원 수강비 및 관련 물품 구입 : 장애와의 연관성 미비, 물품 구매 지원 불가
- (3) 시집 발간비 : 특수한 욕구와의 관련성 미비하며 물품 제작 관련 직접 비용 지원 불가
- (4) 태블릿PC 구매 : 물품 또는 보조기기 구매 지원 불가
- (5) 시 활용 관련 일대일 오프라인 교육 : 기승인한 온라인 교육과의 차별성 미비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3) 목적에 맞는 개인예산사용 비율

(단위: 원, %)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합계
월별 개인예산 지출액	34,083,060	37,394,029	23,665,070	27,512,590	122,654,749
목적에 맞는 개인예산사용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4) 지원영역의 다양성

(단위: 명, %)

이용 영역	11월		12월		1월		2월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일상생활	2	3.2	1	1.2	0	0.0	0	0.0	3	1.3
사회생활	7	11.1	8	9.9	3	6.0	2	4.3	20	8.3
취·창업활동	47	74.6	58	71.6	40	80.0	40	87.0	185	77.1
건강·안전	5	7.9	5	6.2	3	6.0	2	4.3	15	6.3
주거환경개선	2	3.2	9	11.1	4	8.0	2	4.3	17	7.1
전체	63	100.0	81	100.0	50	100.0	46	100.0	240	100.0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5) 참여자 서비스 모니터링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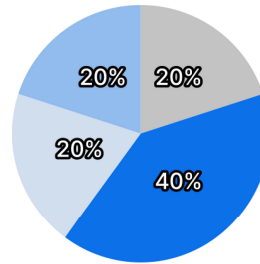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계
참여자 모니터링 건수	127	262	215	133	737
참여자 모니터링 진행 비율	17.2	35.5	29.2	18.0	100.0

6) 중도포기자 수 및 비율

전체 중도포기자 5명(100.0%)

- 건강 악화: 1명(20%)
- 타 지역 이사: 2명(40%)
-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어려움: 1명(20%)
- 원하는 서비스 시공 불가: 1명(20%)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7) 지원영역별 참여자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이용 여부	만족도		삶의 변화 정도	
		평균	만족비율	평균	긍정 비율
취·창업 활동	41	4.29	80.5	4.17	80.5
주거환경	15	4.47	86.7	4.27	86.7
사회생활	13	4.15	92.3	4.08	91.7
일상생활	7	3.86	71.4	3.86	71.4
건강·안전	7	4.57	85.7	4.43	100.0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8) 전반적 만족도 평균 점수(5점 만점)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8)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평균 (5점 만점)	만족 비율	n	
정보제공 (M=3.35)	사업 참여 전 정보 접근성	3.04	40.0	70
	사업 참여 전 정보의 충분성	3.54	58.6	70
	사업 참여 전 정보와 참여 후 정보의 일치	3.49	55.1	69
신청 (M=3.90)	신청 과정의 편리성	3.70	64.3	70
	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 신속성 및 정확성	4.10	75.7	70
	요구 및 의견 반영 충분성	4.17	78.6	70
이용계획 수립 및 합의 (M=4.25)	장애 특성 고려 정도	4.03	72.9	70
	담당자 상담 진행 횟수 적절성	4.31	87.1	70
	담당자 상담과 지원의 전문성 및 도움 정도	4.49	94.3	70
	이용 과정의 원활함	4.16	81.4	70
급여 이용 및 변경 (M=3.77)	급여 사용범위에 대한 만족	3.33	52.2	69
	지원하는 급여량의 충분성	3.49	51.4	70
	급여 사용기간의 충분성	3.09	40.0	70
	문의사항에 대한 담당자 및 담당기관 대응 적절성	4.31	82.9	70
	이용계획 변경시 담당자 및 담당기관 대응 적절성	4.28	84.1	69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1. 전체 사업 성과평가

8)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평균	만족 비율	n
정산 (M=4.26)	정산 과정의 편리함	4.26	85.5	69
	정산 과정의 신속함	4.27	84.3	70
전반적 만족도 (M=4.12)	전반적인 만족 정도	4.04	75.7	70
	사업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4.13	78.6	70
	기대했던 것의 충족 정도	3.86	66.7	69
	원하는 삶으로의 변화 정도	4.00	75.7	70
	주변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추천 의향	4.24	82.9	70
	시범사업 본인 참여 의향	4.49	88.6	70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2. 양적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1) 자기결정(전체 8문항)

구분	시범사업 참여					시범사업 미참여				
	사전	사후	차이	t	n	사전	사후	차이	t	n
여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39	3.54	-.14	-1.858*	69	3.32	3.39	-.07	-.684	71
누구를 만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3.41	3.53	-.11	-1.653*	70	3.39	3.44	-.04	-.418	71
전체	3.44	3.52	-.08	-1.539	69	3.38	3.39	-.01	-.179	69

*p<0.1 **p<0.05 ***p<0.01

2) 자기효능감(전체 5개 문항)

구분	시범사업 참여					시범사업 미참여				
	사전	사후	차이	t	n	사전	사후	차이	t	n
전체	2.84	2.87	-.03	-.556	68	2.87	2.83	.04	.527	70

*p<0.1 **p<0.05 ***p<0.01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2. 양적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3) 자존감(전체 6개 문항)

구분	시범사업 참여					시범사업 미참여				
	사전	사후	차이	t	n	사전	사후	차이	t	n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느낀다. *(역)	2.94	3.20	-.26	-3.191***	70	2.93	3.01	-.08	-.736	71
나는 때때로 내가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	2.94	3.20	-.26	-2.493**	70	2.92	2.86	.06	.469	72
전체	2.99	3.06	-.07	-2.173**	68	2.90	2.88	.01	.341	71

*p<0.1 **p<0.05 ***p<0.01

4) 삶의 만족도(단일 문항)

구분	시범사업 참여					시범사업 미참여				
	사전	사후	차이	t	n	사전	사후	차이	t	n
전반적 삶의 만족도	2.77	2.94	-.17	-2.046**	69	2.90	2.81	.10	1.069	72

*p<0.1 **p<0.05 ***p<0.01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2. 양적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5) 삶의 질(단일 문항)

구분	시범사업 참여					시범사업 미참여				
	사전	사후	차이	t	n	사전	사후	차이	t	n
삶의 질	2.70	2.87	-.17	-2.435**	70	2.92	2.83	.08	1.229	72

*p<0.1 **p<0.05 ***p<0.01

6) 건강

구분	시범사업 참여					시범사업 미참여				
	사전	사후	차이	t	n	사전	사후	차이	t	n
신체적 건강	2.50	2.53	-.03	-.469	70	2.51	2.49	.03	.322	72
정신적 건강	2.94	3.07	-.13	-1.758*	69	2.96	2.97	-.01	-.173	71
전반적 건강	2.74	2.80	-.06	-.893	69	2.76	2.82	-.06	-.754	71

*p<0.1 **p<0.05 ***p<0.01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2. 양적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7) 가족 건강성(전체 10문항)

구분	시범사업 참여					시범사업 미참여				
	사전	사후	차이	t	n	사전	사후	차이	t	n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2.97	3.20	-.24	-3.053***	59	3.34	3.26	.08	.927	65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잘 감싸준다.	2.98	3.12	-.14	-1.657*	59	3.28	3.17	.11	1.223	65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2.88	3.10	-.22	-2.430**	59	3.05	3.05	.00	0.000	64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애정을 잘 표현한다.	2.73	2.92	-.19	-2.027**	59	2.91	2.91	.00	0.000	64
전체	2.94	3.08	-.14	-1.968*	59	3.14	3.15	-.01	-.102	64

*p<0.1 **p<0.05 ***p<0.01

8) 가족응집력(전체 5개 문항)

구분	시범사업 참여					시범사업 미참여				
	사전	사후	차이	t	n	사전	사후	차이	t	n
전체	2.83	2.89	-.06	-.908	59	3.01	2.95	.06	.918	65

*p<0.1 **p<0.05 ***p<0.01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3. 질적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개인예산제를 통한 욕구해결 정도

-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개인예산제를 통해 해결되었으면 했던 욕구들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차 시범사업 승인기준에 미치지 못한 욕구들, 주로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욕구들은 개인예산 승인이 되지 못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개인예산제 이용과정에서의 의견반영 정도

-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개인예산제 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과 주장이 잘 반영되었다고 응답.
- 개인예산제 이용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잘 반영됨에 따라, 개인예산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개인예산제 이용과정에서 불편한 점

-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설명 및 지원을 받아 이용 과정에서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개인예산제 신청 과정에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개인예산제에 대한 개념 및 지원원칙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정산에 있어 내가 원하는 제공기관이 아닌 정산이 가능한 제공기관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정산이 가능한 점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남.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3. 질적조사에 의한 성과평가

개인예산제 이용을 통한 삶의 긍정적인 변화

- 개인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로는 행복감 증가, 삶에 대한 활력을 되찾게 됨, 자신감과 자존감이 증가, 우울감 감소,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됨, 삶의 질 향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됨,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 대응력이 좋아지게 됨, 스스로 성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가족 차원에서는 참여자의 행복이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져 가족 관계가 좋아지게 된 것으로 나타남

개인예산제 향후 추가신청 의향

- 모든 참가자들이 2차 시범사업이 있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가장 큰 이유는 본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임.
- 1차 시범사업에서 승인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재신청 뿐만 아니라 1차 시범사업 기간이 짧아서 기간이 부족했던 서비스를 재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

개인예산제 향후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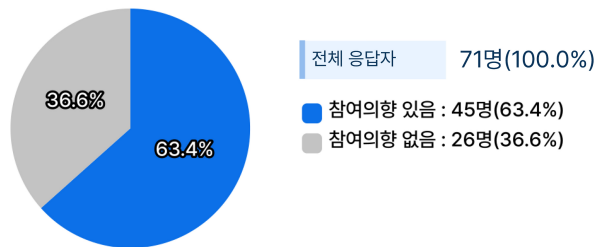
- 개인예산제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정보공유 강화
- 개인예산제 급여확대
- 용도범위 확대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개인예산제 이용과정에서 추가지원 도입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4. 향후 개인예산제 방향성에 대한 의견

1) 본인 부담금 지불 시 개인예산제도 참여 의향



1-1) 지불가능한 본인부담금 범위(전체 개인예산급여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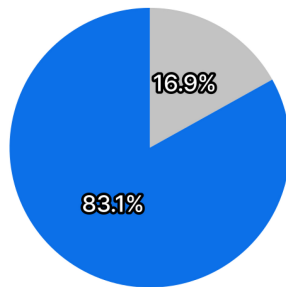
구분	평균	최소	최대	n
전체 개인예산 급여 중 지불가능한 본인부담금 범위	15.51%	5%	50%	44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4. 향후 개인예산제 방향성에 대한 의견

2) 개인예산제 선호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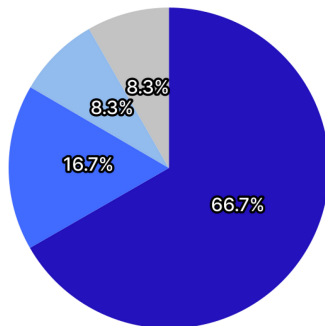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71명(100.0%)
- 보건복지부형 개인예산제도 : 12명(16.9%)
 - 서울형 개인예산제도 : 59명(83.1%)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4. 향후 개인예산제 방향성에 대한 의견

2-1) 보건복지부형 개인예산제 선호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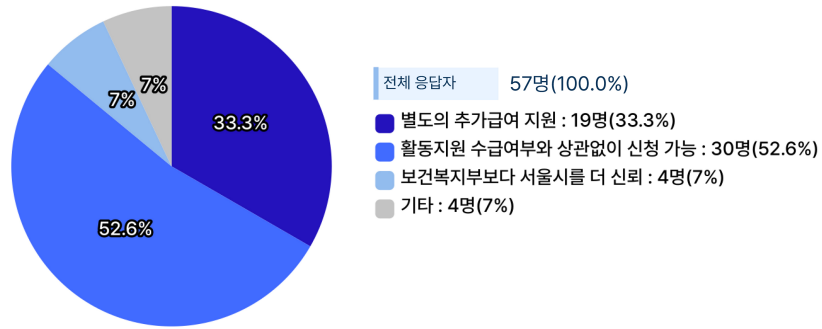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12명(100.0%)
- 급여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 : 8명(66.7%)
 - 15개 장애유형 모두 신청 가능 : 2명(16.7%)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라 신뢰할 수 있음 : 1명(8.3%)
 - 기타 : 1명(8.3%)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4. 향후 개인예산제 방향성에 대한 의견

2-2) 서울형 개인예산제 선호이유



CHAPTER
03

**성과평가
결과**

4. 향후 개인예산제 방향성에 대한 의견

3) 시범사업 참여시 불편했던 점

(단위: 명, %)

구분	n	%
개인예산 이용계획 작성을 위해 지원기관(장애인복지관)에 여러 번 방문해야함	14	15.1
지원기관(장애인복지관)과의 거리가 멀어 접근이 어려움	6	6.5
개인예산 이용계획 작성을 위해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17	18.3
수행기관(한국장애인재단) 담당자의 불친절 또는 소통의 어려움	2	2.2
지원기관(장애인복지관) 담당자의 불친절 또는 소통의 어려움	1	1.1
승인된 개인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기가 어려움	22	23.7
기타	31	33.3
전체	93	100.0

IV. 향후 전망

CHAPTER
04

향후전망

첫째, 대상자 확대 필요

현재 4개 장애 유형에서 5개 장애유형으로 확대 필요

-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및 청각장애인 중심의 신청 자격을 발달 장애인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개인예산제도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 15개 전 장애유형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향후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전 장애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단계적 확대 필요

장애노인 대상 신청자격 확대 필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개인예산제도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65세 미만 장애인만 신청 가능.
-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는 활동지원급여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향후 예산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에게 개인예산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다만, 장애노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거주시설 장애인 대상 확대 검토 필요

- 거주시설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준비중인 시설장애인의 경우 더욱 검토 필요.
- 원칙적으로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나, 향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장애인의 경우 좀 더 유연하게 본 개인예산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검토 필요.

CHAPTER
04

향후전망

둘째, 급여의 경우, 참여자 1인에게 제공되는 개인예산 총액 단계적 확대 검토 필요

서울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확대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의 경우 모의적용 사업과 달리 1차 시범사업부터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용도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용도를 허용하고 있음.
-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용도범위 또한 확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취창업과 연결이 되지 않지만 장애인의 의미있는 낮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여가문화생활 영역 및 자기계발 영역에 대한 지원 긍정적 검토 필요.
- 이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현재 1차 시범사업에서 활용한 개인별지원계획 예산서 및 예산적용 기준의 수정이 요구됨.
- 즉, 개인예산활용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좀 더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요구됨.

CHAPTER
04

향후전망

셋째, 전달체계의 경우,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안내 필요

다각도에서의 홍보 및 정보제공 필요

- 1차 시범사업의 경우, 준비기간 및 처음 진행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신청 및 접수단계에서의 혼선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음.
- 하지만, 2차 시범사업부터는 본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보다 쉽게 본 제도의 취지, 목적 및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의 홍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필요

- 1차 시범사업에서는 정신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많지 않아 참여자의 선택권이 제약받는 경우가 발생.
- 즉, 사업초기 장애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따라서, 2차 시범사업부터는 개인 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CHAPTER
04

향후전망

마지막으로, 재정의 경우, 참여자의 본인부담금 설계 적극 반영 필요

가구소득을 적용한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검토 필요

- 연구 양적조사에서 참여자의 63.4%가 본인부담금이 있어도 개인예산제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부담금은 전체 개인예산제 급여 중 약 15% 범위 내로 나타남.
-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향후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인부담금 적용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 다만, 가구 소득을 개인예산제도의 신청자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가구소득을 적용한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sliding scale) 하는 방식 검토 필요.
- 이와 같은 본인부담제를 설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첫 번째, 개인예산제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
 - 두 번째, 개인예산제 용도 중 취창업과 관련이 없는 문화여가 및 자기계발과 관련이 있는 용도에 국한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

CHAPTER
04

향후전망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는 참여자와 가족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냈음

- 1차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는 몇몇 시행착오를 거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자와 가족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냄.
-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지원해줌**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희망**을 되찾게 되고, 이와 같은 당사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족구성원 전체로 확산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 따라서, 2025년도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의 경우, 1차 시범사업에서의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참여자와 가족의 삶에 보다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발표 3]

한자연 옹호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학습그룹 조직사업의 의미와 제언

안형진 부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설 자립생활연구소)

한자연 옹호 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학습그룹 조직사업의 의미와 제언

안형진 (자립생활연구소)

개인예산제의 이해

- 개인예산제는 왜 나왔나?
- 개인예산제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개인예산제는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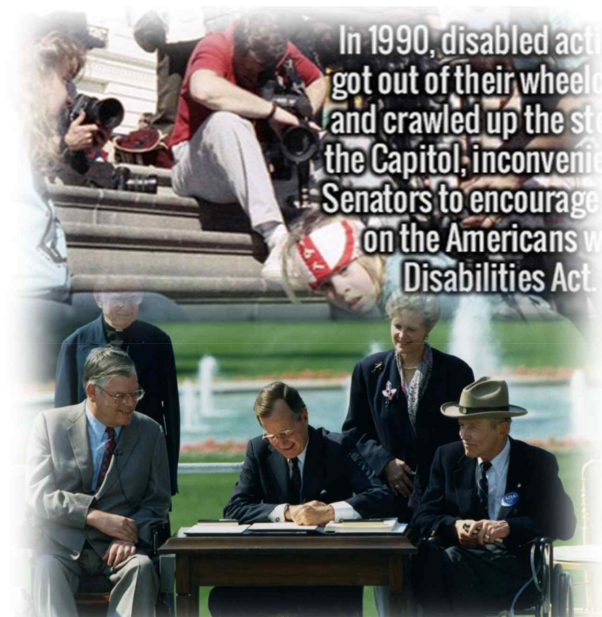
에드 로버츠(1939-1995)

-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립생활운동은 수백만 미국장애인들의 시민권운동이다. 이 운동은 차별과 분리에 항거하는 물결이며, 우리 사회의 책임과 기쁨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능력에 대한 확인이다”(Lachat, 1988: 1).

3

장애인차별금지법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1990. 7. 26)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호주 (1992)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영국 (1995)
- Employment Equality Act, 아일랜드 (1998)
-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ct, 스웨덴 (1999)
- Act on Equality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독일 (2002)
- Act on Equal Treatment on the Ground of Disability and Chronic Disease, 네덜란드 (200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To Justin Dart. ... without your drive, your 4
"beliefs" and your leadership this day would not be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 12 조

법 앞의 평등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persons before the law)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support)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 19 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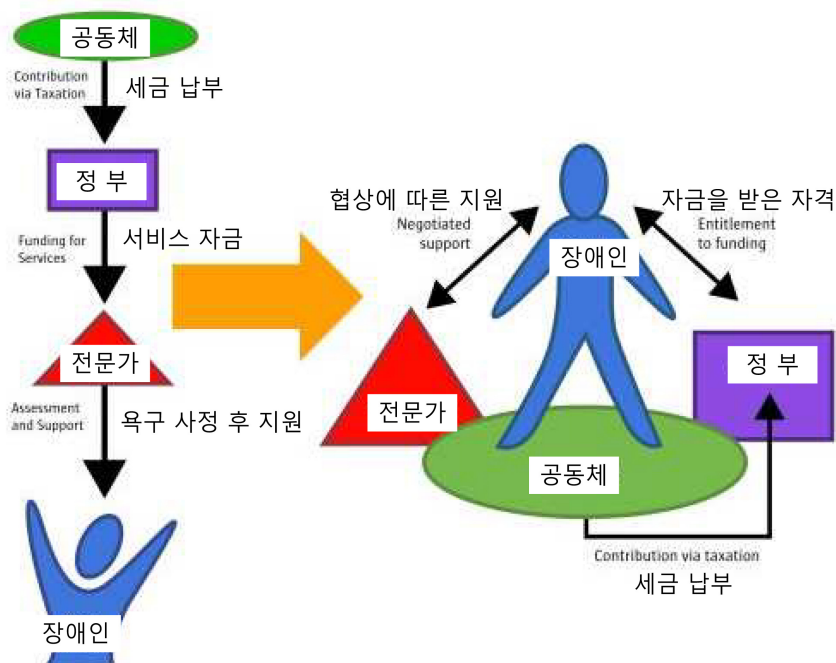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지원패러다임(support paradigm)

- “어떠한 제한 없이 먼저 자신들이 선호하는 삶의 방식과 접근하고자 하는 환경이 설정되고, 이후 그들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따라 이들의 성공에 필요한 서포트의 정도와 형태가 결정됨.”
-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자로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당사자의 권리(Rights)와 개별유연화(Personalization) 그리고 사람중심(Person-centered)접근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음.
- 지적·발달장애인의 서포트 패러다임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 및 자기 옹호 운동(자립생활운동)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음.
- 소비자가 주도하는 **사람중심 계획** 수립 과정(person-centered planning process)과 **개인예산제도**의 급속한 성장
- “케어 제공(caregiving)으로부터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시간 투자(investing time)로 그 주안점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말함”



한자연 자기주도 개인예산 학습그룹 조직사업

- “개인예산 자기주도 옹호 학습협력그룹 조직사업”
 - 개인예산(Self-Directed Budget)을 기반으로 “자기주도 옹호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 및 협력 그룹 조직 사업**

NCAPPS Self-Direction Learning Collaborative

- **목표:**
 - 팀 단위(peer-to-peer)의 학습을 통해 **사람 중심과 자기주도를 지향하는 변화**를 추동
- **주요 개념:**
 - 사람 중심 생각, 자기주도의 옹호, 시스템 변화
- **핵심 가치:**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원칙을 실천
 - **경험 중심:** lived experience(당사자 경험)를 중심으로 활동

Human Services Research Institute. (2019). *NCAPPS learning collaboratives overview*. National Center on Advancing Person-Centered Practices and Systems.

Human Services Research Institute. (2022). *NCAPPS self-direction learning collaborative charter*. National Center on Advancing Person-Centered Practices and Systems.

NCAPPS SDLC 실행

- PDSA 주기란?
- Plan (계획) → Do (실행) → Study (평가) → Act (조정)

단계	주요 활동
학습 세션 1	목표 설정, 개선 모델 학습, 팀별 전략 수립
실행 기간 1	PDSA 주기를 통한 전략 점검 및 데이터 수집
학습 세션 2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 가속화
실행 기간 2	추가 전략 실행 및 팀 간 학습
학습 세션 3	성과 유지 및 확산 전략 수립
최종 서밋 회의	성과 발표 및 지속 가능한 개선 계획 공유

개인예산 학습그룹 조직을 위한 활동

2024년 4월: 13개 센터 추진 결정

2024년 5월: 제1, 2차 워크숍 개최

- 자기주도(4+1 요소)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개인예산 이해 심화

2024년 6월: NCAPPS 초청 연회

- 자기주도의 국제 표준(Global Standards for Self-Directed Support), 사람중심실천의 5대 역량, 자기주도 확대를 위한 전략 개발

2024년 7월: 사람중심생각(PCT) 훈련

- 사람중심실천을 위한 11가지 기술

2024년 9월 이후: 각 센터 단위의 활동

- 참여자 모집 및 실천 사업 추진
- PCP 기반 자기주도 지원 선도 센터와 연구자가 협력하여 개별지원계획 수립 활동 등

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	전문적인 학습을 위한 공동 활동	지역사회 자기주도 개인예산제도 공론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활동의 상을 함께 만들고, 각 센터의 활동에 대해 코멘트 해 줌 • 선도센터 실무자와 연구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기술 지원 활동을 총 4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워크숍: 자기주도 4+1 요소에 대한 학습과 토론 • 제2차 워크숍: 지원 욕구 측정에 대한 학습과 실습 • 국제 워크숍: 미국의 자기주도 개인예산에 관한 활동가들과 워크숍 • 사람중심생각(PCT) 교육(1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유관기관, 공무원,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기주도 개인예산 토론회를 총 1회 진행

자기주도 서비스의 요소 : 4+1

출처: Keilson, J., Bradley, V., Petner-Arrey, J., and Lawrence, J. (2022). Human Services Provider Agency Toolkit for Supporting Self-Determination. Cambridge, MA: NationalCenter on Advancing Person Centered Practices and Systems에 근거함

1. 예산(할당)		활동지원모델
		SIS 가중치 모델
		사람중심 가중치 모델
2. 지출계획	플래너	CIL 계획 모델
		지역 협력 계획 모델
		계획 대행 모델
	위원회	중앙위원회 모델
		지역위원회 모델
		CIL 모델
3. 구매/고용	물품/구매	기본 생활 지원 모델
		지역사회 생활지원 모델
		주관적 웰빙 지원 모델
	고용	자격 기준 인력 모델
		특정 상황 지원 인력 포괄 모델
		관계중심 지원 인력 포괄 모델
4. 재정(관리)		기관책임모델
		공동책임모델
		당사자책임모델
+1. 지원씨클		가족
		동료멘토
		지역사회

연구 개요

•첫째, **개인예산제에 대한 학습 및 연대:** 전국 13개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2~3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4+1 개인 예산 모형의 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둘째, **모델의 설계, 실행 그리고 평가:** 워크숍에서 개발된 개인예산 모형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참여 기관에서 이를 실행하여 실효성을 검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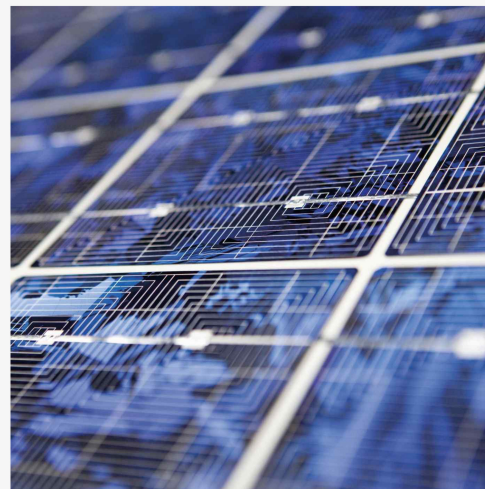
•셋째, **지지와 옹호에 대한 탐색:** 개인예산 사용과 동료 지지를 연계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지지와 옹호의 구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자기주도 학습

사람중심 지원

동료옹호 네트워크



사업 결과 분석

13개 자립생활센터 참여, 워크샵 이후 5개 센터 포기, 단 1개 센터만 최종 단계까지 사업 수행

이들을 인터뷰를 한 결과, 개인예산제가 장애인 자립생활이 지향하는 자기선택과 자기결정과 매우 긴밀하다고 생각하고 본 사업을 신청했으나, 두 번의 워크샵에 참여한 이후에 본 사업을 수행할 내부 역량이 부족하고 담당자마저도 지정하지 못해 포기함.

그러나 이들 5개 센터도 향후 유사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시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람중심계획을 활용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임.

담당자(퍼실리테이터) 발굴 실패	예산 지출 실패	참여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자원 활용 부족	옹호 기반 자기주도 개인예산 목적과 가치 실현
사람중심지원을 하기에는 과중한 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수립한 지원계획이 예산 지출로 이어지지 못함	자기주도 개인예산의 네 개의 과정을 모두 수행했으나, 참여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개인별 옹호, 가족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활동 부족	- 사람중심적인 지원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지출 - 동료상담사 중심의 개인별 옹호 활동 - 가족 등 지원서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5개 센터)	(1개 센터)	(6개 센터)	(1개 센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참여한 13개 센터들 중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과정까지 진행한 7개 센터들 모두, 사람중심계획(PCP)을 활용하여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

예산할당

- 예산할당까지 진행한 7개 센터들 모두, 사람중심계획(PCP)에 근거하여 예산 할당, 단 이 중 1개 센터는 SIS 가중치를 고려함

예산 승인 및 변경

- 예산 지출까지 한 총 7개 센터 중에, 6개 센터는 센터 자체적으로 예산을 승인하고 변경했으며, 1개 센터는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승인 및 변경 시행

예산 지출 용도 및 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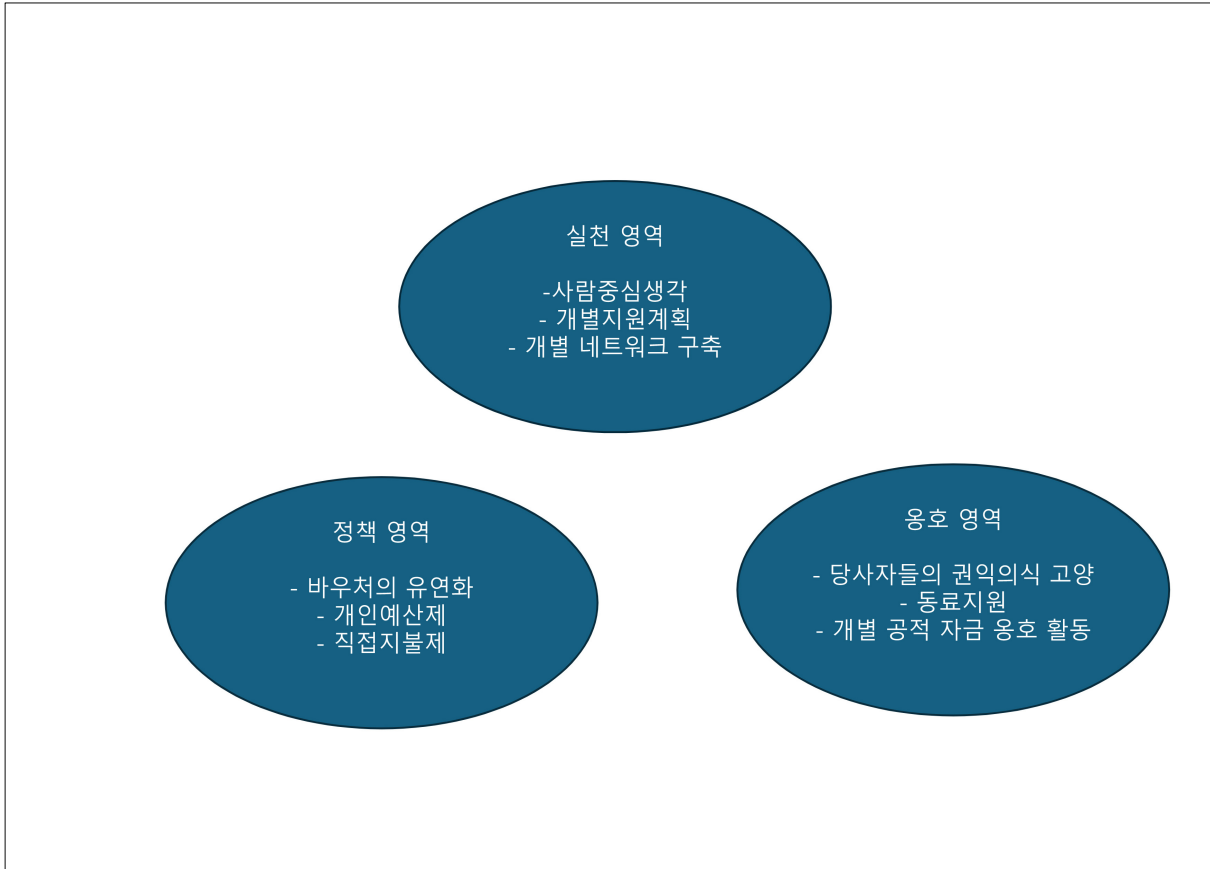
- 7개 센터 모두, 예산 지출 용도 및 용처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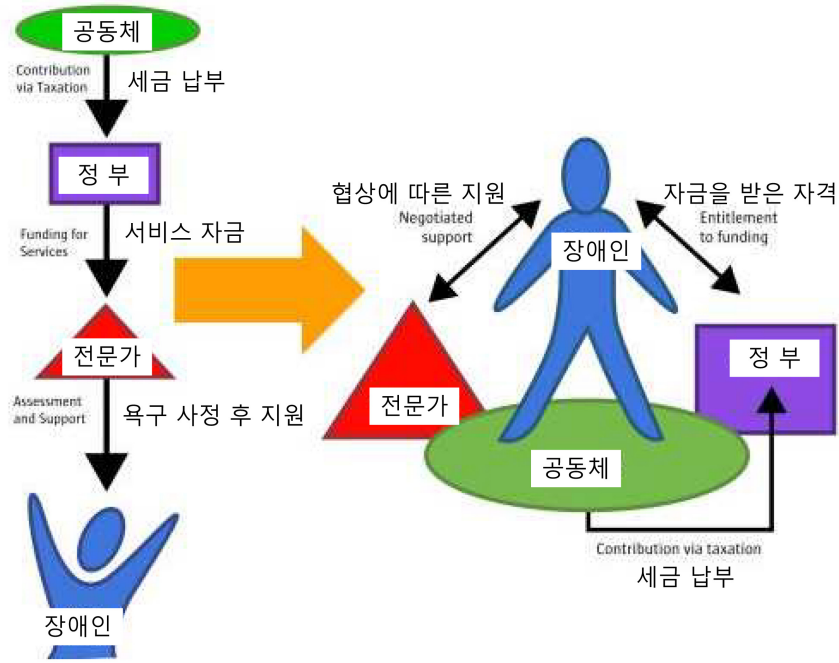
예산 관리

- 7개 센터 모두, 기관 주도로 예산을 관리함

다각적인 옹호 및 동료 지원

- 권리 중심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자기주도와 옹호에 대한 의식 함양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당사자를 잘 이해하는 지원 네트워크(가족, 친구, 동료상담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참여자들의 학습 모임을 운영하여, 참여자들간의 동료지지와 정보 공유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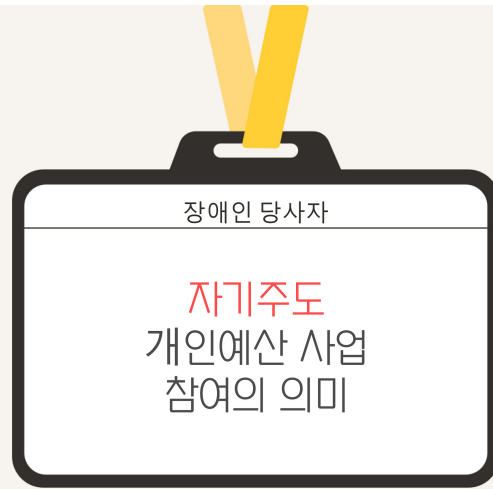


[토론 1]

한자연 옹호 기반 개인예산제도: 자기주도 개인예산 사업 참여의 의미

박정엽 사무국장(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자연 옹호 기반 개인예산제도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차

기존 복지서비스의 한계

- 2000년대 이후 발전
-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 장애인 선택권 감소

개인예산제도 도입 배경

- 서구 선진국의 발전
- 한국 도입 필요성
- 당사자 중심 전환 과제

장애인 목소리 반영 부족

- 정부의 수동적 정책
-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
- 당사자 노력 부족

은평늘봄센터 시범사업 경험

- 3명 참여, 2개월 시범
- 퍼실리테이터 역할
- 개별지원계획 수립

사람중심 접근의 중요성

- 당사자 선호/욕구 중심
- 중증장애인의 지원 방식
- 동료상담 효과

향후 발전 방향

- 심도있는 학습 필요
- 동료지원 체계 구축
- 한국형 모델 개발

장애인 복지서비스



1

다양한 서비스 발전

- 2000년대 이후
- 장애인복지 다양화
- 활동지원서비스
- 주간활동서비스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12만명 이용
- 자립생활운동 영향
- 기관중심 운영

3

장애인 선택권 감소

- 장애인 선택권 축소
- 활동지원사 중심
- 가족 욕구 반영
- 자기주도성 약화

개인예산제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 서구 선진국: 장기간 개인예산제 발전
- 한국 도입 필요성: 진정한 자립생활 지원
- 기존 제도의 한계: 장애인 선택권 축소
- 패러다임 전환: 기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 도전 과제: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의 권한 이양
- 목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기존 지원 및 서비스에서 자기주도성이 부족한 이유

1. 정부의 수동적 복지 정책
2. 공급자 중심 복지 전달체계
3.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 부족



은평늘봄센터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경험

1 은평늘봄센터 시범사업 개요

-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 최우선
- 사람중심생각으로 개별지원계획 수립
- 당사자에게 의미있는 계획 세우기
- 개인예산 지원 실천
- 3명의 장애인 참여
- 2개월간 진행
- 퍼실리테이터와 자원인력 배치
- 1인당 평균 200만원 지원

2 사람중심 접근의 어려움

- 적원 역량에 따른 지원 차이
- **사람중심생각 적용의 어려움**
- 당사자 개별지원계획에 따른 중요성
- 지속적인 실천과 개선 필요
- **프로그램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예산 전달 체계**

사람중심적 접근과 동료지원의 중요성

당사자 선호와 욕구 중심 접근

- 개인의 선호 존중
- 의미있는 삶 추구
- 자기결정권 강화
- 맞춤형 지원 제공

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방식

- 의사표현 지원
- 개별화된 계획
- 충분한 시간 투자
- 다양한 소통 방법

동료지원의 효과

- 마음의 문 열기
- 관계 형성 촉진
- 지역사회 참여 증진
- 개별 옹호

사람중심적 접근의 필요성

- 진정한 자립 실현
- 서비스 질 향상
- 개인 존엄성 존중
- 삶의 질 개선

은평늘봄센터 개인예산제 사업의 특징

사람중심모델 적용

- 개인의 선호 존중
- 맞춤형 계획 수립
- 자기결정권 강화
- 삶의 질 향상 목표

센터의 역할

- 서포터즈 지원 제공
- 체계적인 관리
- 자원 연계 용이
- 지속적인 모니터링

1인당 평균 지원액

- 2개월간 200만원
- 유연한 예산 사용
- 개인별 차등 지원
- 효과적인 자원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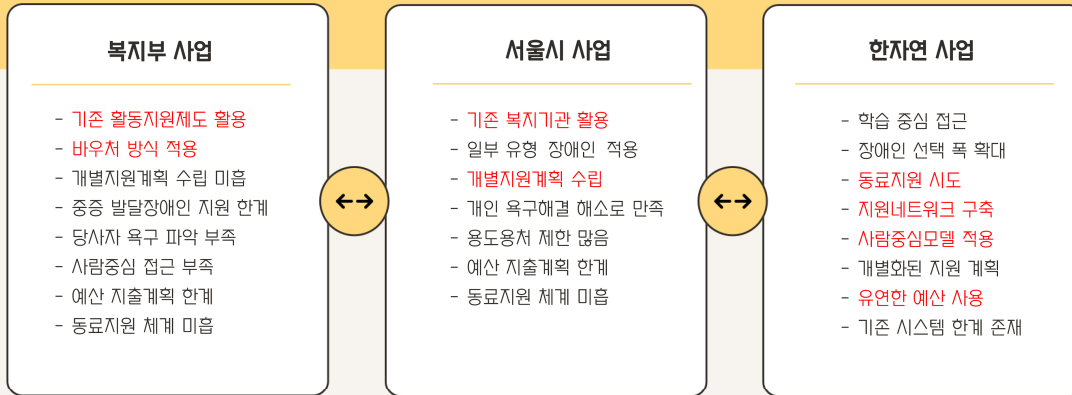
참여자의 마음과 기관의 열린 자세

- 참여자의 적극적 태도 중요
- 기관의 개방적 사고 필요
- 상호 신뢰 관계 구축
-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인적 지원과 제도의 유연성

- 전문 인력 지원 강화
- 제도의 탄력적 운영
- 개인별 특성 고려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복지부, 서울시, 한자연 사업 비교



향후 개인예산제 발전 방향



심도 있는 학습

- 제도의 철학 이해
- 해외 사례 연구
- 실무자 역량 강화



정책 제안 필요성

- 한국형 모델 개발
- 법적 기반 마련
- 예산 확보 방안



동료지원 체계 구축

- 동료상담사 양성
- 경험 공유 플랫폼
- 옹호 중심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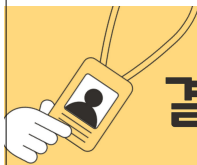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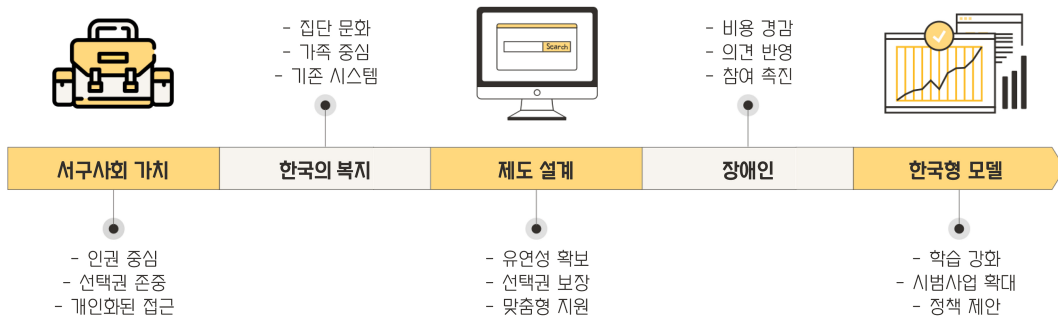


지원네트워크 강화

- 유관기관 협력
-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 통합적 지원 체계

개인예산제 도입 견해

개인예산제는 서구의 가치와 한국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며,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한국형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 개인예산제의 의의와 중요성 재확인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존중 필요
- 한국형 개인예산제 개발을 위한 과제 도출
- 정부, 기관, 장애인, 가족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조
- 지속적인 학습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
- 동료지원 및 지원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인식

[토론 2]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의 성과, 한계, 개선사항

문영임 본부장(한국장애인재단)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의 성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서비스 선택권 확대라는 복지정책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 시도였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장애인 복지체계는 비장애인 중심의 행정·정책 결정 구조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쳐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구조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서비스 지원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최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은 이용자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 도입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서비스의 선택과 통제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실험으로 사료된다.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은 2023년 모의적용 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 영역 및 기준 수립, 참여 장애유형의 확대, 유기적이고 견고한 수행체계를 통한 사업 운영, 촘촘한 서비스 이행점검,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기 개발한 사업 모형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심이었던 기존 모의적용 사업 모델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과 지원영역별 수요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장애유형별 욕구 차이와 서비스 이용 양상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개인예산제의 본격 도입 시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수행기관(한국장애인재단), 지원기관(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7개소), 서울시(총괄기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참여자 대상 교육과 일대일 지원 코디네이터 매칭을 통한 개인 면담, 개인예산계획 수립, 서비스 이행점검,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의 각 단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개인예산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여자의 주체적인 의사 표현과 결정 과정 참여, 이와 관련된 코디네이터의 옹호 기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당사자 중심 서비스 설계라는 개인예산제의 핵심 가치가 일정 부분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운영상 한계 및 미비점

이러한 시범사업 운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한계점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사업과 비교 시 대상자의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서비스 용도(서비스 제공 범위)에 있어 제한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서울형 사업의 경우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증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 '개인의 특수한 욕구', '장애와의 연관성', '삶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지원기준에 따라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 시범사업 대비 지원 서비스 영역의 범위가 좁았으며, 취창업과 연계된 교육, 주거환경 개선, 건강·안전 영역 중심으로 서비스가 승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예산계획 수립부터 서비스 심의 과정 또한 다단계의 절차(대상자 면담→지원기관에서 개인예산계획서 수립 및 제출 - 1차 소위원회 검토 의견서 작성, 2차 개인예산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급여 승인)를 통해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참여 주체(서비스 참여자, 수행기관, 지원기관, 소위원회 및 개인예산운영위원) 모두 행정적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엄격하고 다단계에 걸친 검토 및 심의과정은 본인이 기 할당받은 해당 바우처 내 일정 금액을 용도·용처 전환하여 사용하는 중앙정부 모델과 달리 서울형 모델은 기존 할당받은 서비스량의 축소 없이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된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참여자의 직접 욕구에 근거한 급여 할당을 추진하되 한정된 재원 내 급여 할당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엄격한 심의 과정 및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정영역의 급여 승인(기존 제도 내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재화 구입 불가 등)을 제한함에 따른 결과로 유추된다. 다만 향후 지원 규모가 확대 예정인 본사업 추진 시에는 다양한 지원영역 내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간결하고 효율적인 심의 기준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급여 승인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손상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른 양적 사정 도구 활용을 지양하고, 수립된 지원 기준(원칙)에 따라 개인의 욕구 기반 신청 서비스의 심의를 질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취창업 연계 및 자기계발 교육 항목의 경우, 심의위원 간 지원 기준 적용 시 주관적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향후 서비스 심의 시 한정된 공적 예산 내에서 개인의 욕구 기반 서비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세분화된 승인 기준 및 평가 도구의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현금 급여 지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제도 운영의 현실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 정책실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본 사업 시행 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1차 시범사업은 현금 지급 방식 대신 수행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우회적 대안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실행해야 하는 정산과정 또한 서비스 제공과 회계 처리 간의 시간 차이, 행정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참여자의 서비스 이용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수행기관이 이용자를 대리하여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업 참여자의 공공부조 수급 자격 유지 및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비용 현금 지급 방식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강화와 서비스 선택 및 통제에 따른 이용자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는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시범사업은 개인예산제의 실현 가능성을 제도적·행정적 차원에서 점검한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제도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를 명확히 도출해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 실질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실험이었다고 판단된다.

향후 전체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시 자치구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장애 유형별 지원 전략 차별화, 지원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개인예산제 지원 업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정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제도의 도입,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 서비스 질 관리 등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사료된다.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 및 추진방향 제언

최근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사회 돌봄 비용 증가로 인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의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 Scheme)’가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정부 모델과 차별화된 모델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수행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환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 실험을 통해 우리는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본 사업 추진에 있어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은 기존 참여 대상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 외 발달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을 포함하여 실행된다. 이에 2차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전달체계 정비, 개별 욕구 평가 및 서비스 사정을 위한 실증적 도구 개발, 사회서비스 현금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관련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개인예산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끝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더불어 기존 서비스 지원 외 추가급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설계 병행을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토론 3]

복지부, 서울시, 한자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토론

유명해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올레세미나

복지부, 서울시, 한자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토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

유명해

2025년도 벌써 4월 이제 벚꽃도 피고 곧 다시 여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난 2024년 참 더웠던 여름, 우리나라에 세 유형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활발히 운영되었습니다. 복지부 추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사무국 담당으로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낮은 제도임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주신 장애인과 가족, 현장에서 고생하신 복지전문기관 담당자, 시범사업 지자체 공무원, 청년인턴, 지원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개인예산제와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관계된 모든 분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장애인복지학회 관계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10년대부터 학계나 장애계를 중심으로 국외사례 소개 및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예산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중 후보공약에 개인예산제 도입이 포함되고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면서입니다. 앞서 이한나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과 같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장애인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복지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동 계획에 따라 기존 활동지원 급여의 유연한 사용을 통한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2023년의 모의적용사업과 2024년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복지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실무기관 담당자의 산 사람으로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에 기반하여, 세 분의 발제자께서 복지부, 서울시, 한자연에서 작년 한해 추진한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해 주신 발제문을 바탕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급여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서울시와 한자연의 시범사업은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활용한 복지부 시범사업과 달리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하였으며, 한자연의 경우 기관 자율로 운영되어 금액의 제한은 있었던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부의 급여방식은 장애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수급량에서 일부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선정에 별도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한자연의 시범사업 형태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이용계획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고, 한자연의 시범사업의 경우 별도의 선정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서울에서 이용계획은 서울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지원기관과 함께 수립한 개인예산 이용계획이 아닌 신청접수단계에서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 내 이용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절차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신청 대상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장애유형과 연령에 상관없이 본사업을 진행할 경우 혼자 개인예산 이용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발달장애인이거나 장애아동 등은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자연의 시범사업에서 추진한 지지와 옹호라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지와 옹호와 관련하여 본사업 도입 초기에는 지지와 옹호를 가장 가깝게 지원할 동료상담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에 대한 관련 교육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를 통한 선정 방식은 이한나 박사님의 발제문에서도 지적된 것과 같이 선정의 보편성, 공정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림 1. 서울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사업절차

(출처: 한국장애인재단, (2024)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또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외사례와 같이 개인예산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사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연구와 추가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장애인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일정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복지부 시범사업의 형태로 본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인의 급여의 일부를 유연하게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절차는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본사업의 예산이 어떤 형태로 마련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예산의 이용범위를 보면 한자연 시범사업은 제한을 전혀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이용불가 항목 외 장애연관성, 목표연관성 등이 확인되면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었고, 서울시 시범사업의 경우 장애인에게 필요하지만 기존제도 내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확인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즉, 서울시 시범사업은 기존제도가 보장하는 서비스와 물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한하였습니다.

개인예산의 이용범위 있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한자연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13개 센터 중 7개 센터가 사람중심계획에 근거하여 용도와 용처 제한 없이 예산을 할당하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도와 용처를 허용 하였는지 실제 정산까지 된 사례를 예로 들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시범사업을 서울시와 비교하면,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개인예산 이용계획 이의신청 중 수용되지 않은 서비스와 물품의 경우 참여 장애인의 장애와의 연관성과 목표달성이 확인된다면 복지부 시범사업에서는 이용계획 합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지부 시범사업이 서울시보다 좋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고가의 전자제품 구매, 여행비와 같은 문화·여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부정사용방지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기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의미 있는 낮 생활과 자기개발이라는 기준은 모든 이용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모든 시범사업에서 장애인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기관을 두었습니다. 복지부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발달장애인센터 등 장애인 대상 사례관리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관내 장애인 대상 복지자원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을 시군구가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의 경우 시립장애인복지관 7개소가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자연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담당자가 퍼실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자연 시범사업은 퍼실레이터 기관 담당자가 사람중심지원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워크샵 등을 운영하여 노력하였으며, 서울시 시범사업 또한 서울장애인복지관 블로그에서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서울시 개인예산 모의적용 및 시범사업 참여 시 사람중심계획과 사람중심 실천을 기반으로 개인예산이용계획을 수립¹⁾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복지부 시범사업의 경우 6개월이라는 시범사업 기간 내 개인예산급여의 생성을 기존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1달이라는 기간 내 복지전문기관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현실에 부딪쳐 사람중심계획 및 실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습니다.

1) 서울장애인복지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ajung1982/223728792885>

개인예산제가 어떠한 급여방식과 이용범위로 도입이 되더라도 개인예산제의 본연의 목적인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높이고 개인예산제 전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계획 및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현장에서 사람중심계획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사람중심계획 실천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안형진 부소장님 발제내용에서도 확인되듯이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기존 인력에게 추가로 과업을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즉, 개인예산제 본사업에서는 사람중심계획 및 실천을 통한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가 양성·보수교육 과정과 함께 기존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에 개인예산 이용계획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때 인력 추가 배치 및 업무조정과 관련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형진 부소장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보호자에게도 개인예산제와 함께 사람중심계획 및 실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예산의 사용 및 정산입니다. 한자연 시범사업은 13개 참여 기관 중 1개 기관이 마지막 과정까지 이루어졌다는 내용 외 실제 정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사무처인 장애인재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하였고 복지부 시범사업의 경우 장애인이 선지출한 영수증을 기반하여 후정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사업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의 방식과 복지부방식 모두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사용처 중 비과세사업장이나 카드단말기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앞서 논의한 개인예산의 이용범위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정산시스템 개발 난이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간 소개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국외사례를 살펴보면 대상, 급여범위, 용도·용처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내용이 많으나 정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외사례 및 국내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예산의 사용 및 정산에서도 장애인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부정사용 방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복지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와 한자연의 시범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향후 방향은 어떠한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 되었으며, 오늘의 이 자리가 장애인의 권리 기반 우리나라의 정책이 발전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